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1. 7. 13.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1년 6월 21일

나.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1년 6월 22일

라. 상정일자 : 제161회 2011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1. 7.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채재묵)

가. 제안이유

- 위원회 임기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고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안 제4조제1항)
-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이 현 영)

- 이 개정조례안은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위원의 임기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 하려고 하는 것임.
- 주요 개정사항으로 현행 조례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붙여

쓰기를 한 바, 이는 위원회 등의 이름은 붙여 쓸 수 있도록 한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변경한 것임.

- 안 제1조에서 목적 규정을 수정한바 이는 조례의 목적을 간결하면서 적절하고 종합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수정한 사항이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로 한 것은 목적 규정에서는 약칭을 하지 않는 법제처 규정에 따라 약칭 사항을 삭제한 것임.
- 안 제4조제1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로 개정한 바 이는 위원회 임기에 대하여 연임제한 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여 짐.
- 위 개정조례안은 우리구정과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위원회 임기에 대한 연임제한을 규정하여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한 개정임.
- 그 밖의 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으로 적정하며 본 개정안의 검토결과 특이사항이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56 호
----------	--------

제출연월일 : 2011. 6.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위원의 임기 연임제한규정을 명시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전문가 인적자원의 참여 기회를 균등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명시함.(안 제4조제1항)

나. 법제처에서 정한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문구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합의사항 없음

라. 기 타

(1) 신·구 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2011. 4. 7 ~ 4. 27)결과 : 의견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사무 없음

붙임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조정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영등포구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직무를 통할”을 “업무를 총괄”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구”를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로 한다.

제11조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생략)</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u>직무를 통할한다.</u></p> <p>② (생략)</p> <p>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③ (생략)</p> <p>④ 위원장은 <u>구</u>에 제출된 민원사항 중 에서 위원회 회의에 부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p> <p>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 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 산의 <u>범위 안에서</u>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 <u>업무를 총괄</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7조(회의의 소집 등)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 <u>영등포구(이하 “구” 라고 한다)</u> ----- -----.</p> <p>제11조(수당 등) ----- ----- ----- <u>범위에서</u> ----- -----.</p>